

<별지 제6호> <개정 2014.12.12., 2021.10.13.>

분할 승인신청서

분할전회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분할후 존속회사 (분할회사)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분할후 신설회사 (분할신설회사)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
■ 첨부서류

1. 분할계약서 사본 1부
2.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(분할회사)의 정관변경(안) 및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(분할신설회사)의 정관 제정(안) 각 1부
(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정관제정안 각 1부)
3. 분할전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
4. 분할로 이전할 업무범위 및 분할재산현황에 관한 서류(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) 각 1부
5. 분할신설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(사업전략,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, 조직구조 등 포함) 1부
(분할신설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)
6.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
7. 분할계획서 및 분할의 이유·분할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
8.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·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[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추정 순자본비율(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) 및 산출근거자료 각 1부]
9.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
10.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
11. 투자자·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
12. 분할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
13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1항제1호에 따라
분할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